

2022 서브노트(세법개론 목차) 정오표 - 6. 7. 현재

I. 수정사항 개요

2022년 5월 31일에 주택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요건

-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 ②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 ③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요건

-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 ②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 ③ <삭제>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①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개정) 다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2. 5. 10일부터 2023. 5.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① 세율 : 기본세율(6~45%)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II. 수정사항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159	상18	<p>*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 충족시 1주택</p> <p>a. 신규 주택을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p> <p>b.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p>	<p>*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 충족시 1주택</p> <p>a. 신규 주택을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 개정</p> <p>b.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개정 이내 양도</p>
2-160	하14	<p>(2)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p> <p>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건축법의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p> <p>* 2주택 보유시에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1주택 보유요건의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삭 제 ></p> <p>개정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규정은 2022년 5월 10일부터 폐지되었다.</p>
2-169	하6	<p>*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특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은 제외</p>	<p>*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특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은 제외. 다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p>
2-178	하6	< 추 가 >	<p>* 2.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p>